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단2643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7. 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5. 14. 접수 제206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원고가 2019. 10.경부터 2020. 5. 14.까지 사이에 C에게 합계 19,489,875원을 대여하고,

C로부터 11,450,000원을 변제받아 2020. 5. 14. 기준 C에 대한 8,039,875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가 2020. 5. 14. C로부터 C 소유의 유일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5. 14. 접수 제206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C가 유일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5. 14. 접수 제2066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D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C가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유일 부동산을 처분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피고는 C의 모친으로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